

이처럼 경제성 문제 등으로 처리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비닐봉지와 플라스틱 등을 생활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을 활용해 열에너지 원료로 공급할 수 있게 됨으로써 환경오염 예방과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이 가능하게 됐다.

군 관계자는 “생활쓰레기에서 나오는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등은 그동안 별도의 선별과정 없이 소각로나 매립장에 버려져 2차 환경오염과 매립지 사용기간을 단축하는 부작용이 발생해 왔다”며 “군에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게 됐으며 여기서 나오는 고형연료를 재활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5개월여 동안 MBT 시설을 이용해 총 1천2백80여톤의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면서 부숙토 4백6톤(31.6%)과 RPF 1백40톤(10.9%), 고철·캔 등 23톤((1.8%)을 생산했으며 5백2톤(39%)은 건조 및 발효에 의해 자연 감량시켜 환경오염을 줄여나가고 있다.

전라북도
세계물류박람회 개막
 15개국 2백20여개 업체 참가

전라북도가 새만금 지역을 물류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주최하는 ‘제1회 전북 세계물류박람회’가 지난 달 10일 전라북도 군산에서 개막됐다.

14일까지 5일간 군산시 오식도동 새만금 군

산산업전시관에서 열렸던 이번 행사에는 15개국에서 2백20여개의 국내외 물류 관련 업체가 참가했다.

1천3백여개의 부스가 설치된 새만금 군산산업전시관(Logex Center)은 물류미래관과 물류세계관, 수송물류관, 중고 물류장비 경매관 등 7개 관으로 구성됐다. 육상·항공·해상 운송 및 택배, 운송장비(상용차 특장차 등), 물류장비(컨베이어 크레인 리프트 지게차 고소작업기 등), 포장·유통·보관·하역 관련 기기 등이 선보였다.

국내에서 두산인프라코어와 (주)한진, 대한통운(주), 한솔CSN, 아시아나 IDT, 세방(주), 동부제강(주) 등 대형 물류업체가 참가했다. 해외에서는 미국과 일본, 네덜란드 등 15개 국가에서 UPS, DHL, TNT를 비롯해 미국 상용차 부품회사인 와스엔첼린 사 등 모두 56개 업체가 참여했다.

박람회 기간 중 국제물류학술 회의도 잇따라 열렸다.

또한 개막일인 10일에는 군산 물류혁신지원센터 세미나실에서 ‘동북아 물류 증가에 대비한 새만금 세계화 전략’을 주제로 열렸고 11일에는 ‘한·미,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새만금 활용방안’과 ‘동북아 물류 패러다임’을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학술회의에는 세계적 물류 석학인 트레버 히버(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 교수와 같은 학교 소속 임태훈 교수, 한국중합물류연구원 정필수 원장, 일본 오사카 항만국 야마다 히로후미 과장 등 10여명의 국내외 물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환경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합리적 개선
재활용의무 면제기준 완화

환경부(장관 이규용)는 포장재 사용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재활용의무 면제기준을 완화하는 것과 고휘연료 제품에 페타이어 고휘연료(TDF)를 포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달 11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캔·유리병·플라스틱 등의 포장재를 사용하는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재활용의무 면제기준이 기존 매출·수입액 기준에서 매출·수입액 및 생산·수입량 기준으로 조정된다.

지금까지는 연간 매출액 10억원, 수입액 3억원 이상인 제조·수입업자(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에게 포장재 사용 제품의 출고·수입량과 관계없이 일정 비율의 재활용의무가 부과됐으나,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매출·수입액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포장재를 사용하는 제품의 출고·수입량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재활용의무생산자들의 경우 재활용의무가 면제될 예정이다.

이번 면제기준 조정에 따라 품목별로 약 36%~59% 정도의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의무를 면제받는 반면, 재활용 의무량은 0.04%~0.96% 정도 감소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돼 재활용의무량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소규모 재활용의무생산자의 부담은 대폭 면제되고, 재활용의무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 등 행정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재활용의무가 부과되는 포장재 품목 및 대상도 조정되는데, 개인용 컴퓨터의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에 대해 재활용의무가 새로 부과되는 반면, 의료폐기물로 배출되는 의약품(항암제, 백신, 화학치료제)의 포장재 및 판매과정에서 반품돼 폐기되는 포장재에 대해서는 재활용의무가 면제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1년 단위로 산정하는 재활용의무를 산정에 5년 단위의 장기 재활용목표율을 도입하여 생산자들이 자율적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재활용 촉진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게 하고, 재활용의무 이행 확인에 필요한 관련서류 제출시기를 한 달 정도 늦추는 등 의무생산자의 업무부담이 완화된다.

또한, 국제 원유가 상승으로 페타이어를 연료로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고휘연료제품에 페타이어 고휘연료(TDF)를 포함하고 이에 대한 품질기준도 마련된다. 이와 더불어 고휘연료제품의 제조·유통·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고휘연료제품의 품질시험기관 및 인증기관을 정하고, 품질·등급 인증절차, 인증수수료 산정기준 등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년 말까지 공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관련 업계와 공제조합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의무생산자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며, 앞으로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의약품 표준바코드 의무화
내년부터 모든 제품 적용

내년부터 모든 의약품에 표준바코드 표기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변재진)는 모든 의약품에 정부가 정한 표준 바코드를 표기하도록 의약품바코드표시 관리요령 고시를 개정하고 입안예고했다고 밝혔다.

입안예고에 따르면 내년부터 의약품 생산업체는 모든 의약품에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13자리 숫자로 표기된 의약품 표준코드(KD코드)를 부착해야 한다.

그동안 바코드 표시를 생략할 수 있었던 소량 포장의 주사제, 액제 등 단품에도 표준코드 표기가 의무화된다. 또 내년 7월부터 안전한 사용을 위해 주의가 필요한 전문의약품과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인화·폭발성 의약품과 생물학적 제제 등 지정의약품에는 표준코드에 유통일자과 제조번호 정보가 추가된 EAN/UCC-128 바코드를 사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2009년부터는 병·의원과 약국이 건강보험 진료비를 청구할 때 의약품 표준코드 중 생산업체와 제품명 정보를 담은 9자리 수를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입안예고에 대한 여론수렴과 규제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모든 의약품에 공동으로 적용되는 표준코드 도입에 따라 의약품 물류관리 효율성이

제고되고 보건의료정보 표준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의약품 안전성도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교통부
물류전문기업 활용도 실태조사
물류시장, 물류전문기업 중심 전환

우리나라도 화주기업의 물류전문기업 활용도(제3자 물류 비중)가 계속 높아져 물류시장이 물류전문기업 중심으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와 무역협회가 공동으로 '07년 7월~9월간 수출입업체 1천2백개사(유효 응답 5백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07년도 화주기업의 물류전문기업 활용 비중(제3자 물류 비중)은 42.2%를 기록, 2002년 대비 16.5% 포인트, 2006년도 대비 3.4% 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수출입 규모 1억불 이상 업체(46.4%)와 종업원 수 300인 이상 대기업(49.7%)의 제3자 물류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주기업들이 가장 많이 위탁하는 물류 분야는 국내 운송(81.3%), 국제운송(64.6%), 통관 및 세관(61.6%) 순으로 조사됐다.

물류전문기업을 활용하는 이유는 고객에 대한 규칙적이고 안정적 거래, 문제발생시 신속한 처리가능, 전반적인 물류서비스 수준 향상 등이 주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작년부터 시작된 종합물류업 인증제에 대해 화주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

로 밝혀졌다.

약 40%의 응답 업체는 향후 3자물류기업을 선정할 때 종합물류기업 인증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거나, 선정시 가산점을 부여할 것이라고 답했다.

금번 조사 결과, 화주기업의 물류전문기업 활용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물류기업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화주기업들이 물류전문기업을 활용치 않고 있는 주된 이유는 “현재의 물류서비스에 만족하기 때문”이거나 “제3자 물류에 대한 지식과 정보부족” 때문이란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따라서 제3자 물류의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함께, 화주들이 안심하고 장기간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물류업체의 육성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건설교통부는 금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2010년까지 물류전문기업 활용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하반기까지 우수 물류기업을 추가 발굴하여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현재 21개)하고, 종합물류기업에 대한 통관취급 허용('07.10)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제조기업의 물류전문기업 활용비(제3자 물류비)에 대한 법인세 감면, 물류 정보시스템 도입시 생산성 향상 임시 투자세액 공제('08), 제3자 물류 컨설팅 비용 보조('08) 등 지원 방안도 차질 없이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물류체계의 효율화와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정된 물류정책기본법('08.2 시행)이 정한 취지에 부합하도록 물류전문기업 활용에 대한 지원강화, 인증종합물류기업 활성화,

물류자동화 및 공동화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시책 등도 추진하여 물류산업을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지속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무가당 표시제한 등 알기 쉽게 개편
12월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명현)은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식품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을 주 표시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 조정해 활자 크기 확대와 점자표시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트랜스지방 함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세부 표시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특정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것처럼 '무가당' 표시를 하여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표시행위를 금지했다.

이 밖에도 품질유지기한 의무 표시대상식품에 맥주를 추가했으며 유통기한 임의변경 금지, 알레르기 유발물질 추가, 영양성분표시 단위를 '1회 제공량'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식품의 표시를 쉽게 확인 할 수 있고, 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과 그동안 식품 구매시 어려움을 겪었던 시각장애인 등 소외계층도 직접 식품 구매가 가능하게 해 소비자의 식품 선택권이 더욱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